

# 전략물자수출통제에 대한 현실인식과 대응

## 1. 세계는 지금, 수출 동력을 지키는 게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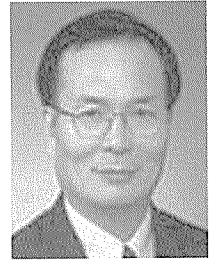
수출은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이다. 작년에 내수부진 속에서도 수출 덕분에 성장이 가능했다는 사실이 우리경제에서의 수출의 가치를 입증한다. 이와 같이 수출에 의한 성장모델은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유럽의 선진국들도 추구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계시장 속에서 경쟁력은 치열해져 갈 뿐이다. 이러한 국제환경 속에서 수출의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기업의 경쟁요소가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경쟁력 못지 않게 수출을 금지 당하는 위험을 예방하는 것도 기업이 갖춰야 할 성장동력의 보호장치다. 무역제한을 가져오는 국제무역규범 가운데서도 특히 전략물자수출통제(Export Control)는 미국을 위시한 EU, 일본,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선진국시장에서 최대의 관심사중의 하나이다.

9. 11테러이후 이라크전쟁의 목적은 국제안보질서를 위해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 은닉한 혐의에 대한 강제사찰(Challenge Inspection)이었다. 2003년 5월 부시대통령의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제창은 수출통제제도를 각 나라가 단순히 도입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불법·밀거래를 차단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국제공조를 통해서 의심화물을 실었다는 정보가 있는 비행기의 강제착륙, 선박의 정선, 승선조사, 압수를 집행한다. 올해 3월까지 5차 국제회의와 실제 연습작전이 9회이상 이뤄졌다. 안전운항보장 등 기존의 국제질서와 충돌될

위험이 있음에도 미국, 일본, EU, 호주, 폴란드, 싱가포르 등 15개국의 PSI에 참여했고 60여개국이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우리의 수출과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우리 수출품이 의심화물로 될 경우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외에도 2003. 7월 ASEM 외무장관들이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공동선언, 같은 해 10.7일에는 발리에서 아세안플러스3회의에서 한·중·일 3국 정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기초하여 WMD 비확산에 협력을 선언하셨다.

10여년 전부터 선진국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업내에 수출통제 조직을 두고 있다. 통제대상 물품을 생산, 수출하는 업체들은,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EMS(Export Management System)등 이름으로 내부 이행제도와 영업라인과는 독립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전자, 반도체, 화학, 기계, 소재, 무역 등 첨단제품을 다루는 업종가운데 1,000여 업체가 기업내부 자율준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출하제품에 대하여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될 경우 허가절차를 이행하고 이행한 증거를 보존한다. 미국의 기업들은 더욱 철저하며, 미국계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들도 거의 모두 이와 같은 자율준수제도와 조직을 갖추고 있다. 알코아 창원공장의 경우는 알미늄 제품이 제3국에서 이동되어 우려집단의 수중에 들어가 이용될 것에 대비하여 제도를 이행한 증거로 전자 서류 데이터를 50년간 보관한다. 시설에 부착된 알미늄관 등이 50년 후에도 발견될 것에



심성근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과장

수출통제제도를 각 나라가 단순히 도입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불법·밀거래를 차단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국제공조를 통해서 의심화물을 실었다는 정보가 있는 비행기의 강제착륙, 선박의 정선, 승선조사, 압수를 집행한다.

올해 3월까지 5차 국제회의와 실제 연습작전이 9회이상 이뤄졌다. 안전운항보장 등 기존의 국제질서와 충돌될 위험이 있음에도 미국, 일본, EU, 호주, 폴란드, 싱가포르 등 15개국의 PSI에 참여했고 60여개국이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대비한 면책증거의 보존개념이다.

이러한 제도에 무관심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례가 많다. 미국은 9. 11테러이후, 국토안보부를 창설하여 세관과 출입국관리 기능을 통합하고 국경, 국내외에서 감시·색출·차단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이동차량에 의한 X-ray 투시기와 첨단검색 장비로 수송중인 컨테이너, 기차, 비행기 인근에서 촬영하여 중앙 전산기로 보내면 전산처리로 분석하여 의혹화물을 추적할 수 있는 색출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또한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에 의하여 의심스런 화물의 차단을 위하여 우리나라 부산항을 포함하여 세계 주요항구에 미국세관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 PSI(확산안보구상)가 수출통제를 위반한 불법화물과 밀거래를 대상으로 국제공조에 의해 운용되는 상황에서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를 기업이 무관심이나 무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위기를 자초할지 모르기에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 2. 위반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미국은 전략물자에 대한 연간 수출허가 6만건 이상, 수출규모 900억불 이상이다. 수출허가는 수출을 제한하는 나라에 1회에 한하여 승인하는 개별허가가 있고, 1개국 또는 여러나라에 대하여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포괄허가가 있기에 수출통관 건수와는 다르다. 수출통제 위반이란, 허가를 받아야 할 품목이나 국가에 대하여 허가없이 수출하거나, 수출품목 명세서, 최종사용자, 최종도착지를 세관이나 허가기관에 허위로 신고하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실수, 절차 위반을 말한다.

미국은 이러한 위반에 대하여 매년 2,000건 이상의 혐의사실을 조사하여

대부분은 무혐의, 시정권고, 행정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처리로 종결하지만 35~50건은 형사고발 한다고 미국 관리로부터 들은 바 있다.

미국이 '95~2000년 사이에 전략물자수출통제 위반으로 처벌한 129업체의 사례는 흥미롭다. 형사처벌내용이 징역형 외에 벌금, 그 기업의 수출권한을 일정기간 금지한다. 이러한 처벌이 우리업체에게 미치는가? 미국은 우리 국내법과는 별도로 그 수출품에 미국의 부품이나 기술이 10%만 포함해도 미국법에 의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실제로 외국기업을 처벌하고 있다. 129업체중 20여건은 캐나다, 멕시코, 프랑스, 독일, 네델란드, 영국, 대만, 이태리 등 외국기업에 대한 처벌이다.

우리기업의 최대 관심은 무역권한을 박탈하는 무역금지 제재다. 129건중 미국으로의 수출 또는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 수출을 금지한 45건의 무역금지 기간은 아래와 같다.

무역금지기간	업체 수
15년 이상	4
10~14년	11
5~9년	12
4년 이하	18
총계	45(건)

그 외에 책임자에 대한 징역이나 구속 18건,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벌금형은 114건이며 벌금액수의 최고는 1,500만불, 100만불이상은 15건이었다.

이것은 현재 5년이상 경과한 과거 사례로 모든 처벌사례가 망라된 것이 아니며, 최근 국제적으로 수출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 1) 전자업체의 처벌사례

반도체, 전자, 컴퓨터에 대한 처벌 사례는 어떤가?

미국은 컴퓨터에 대하여 MTOPS

(Millions theoretical operation per second)에 의하여 대상국가의 위험도에 따라 허용범위가 구분되는데, 8등급으로 분류된다. 0~6, 6~2,000, 2,000~6,500, 6,500~10,000, 10,000~12,500, 12,500~20,000, 20,000~33,000, 33,000이상 (MTOPS). 국제수출통제체제 바세나르협정은 28,000 MTOPS 이상, MTCR(미사일 수출통제체제)는 -45°C 이하 및 +55°C 이상에서 작동가능한 컴퓨터 또는 방사능에 견딜 수 있는 것, 기타 특수목적의 전용 컴퓨터 등을 제한한다.

미국의 Gateway 2,000사는 수출허가를 받지 않은 채 컴퓨터를 이란, 리비아, 시리아, 중국 등 16개국에 수출했고, 그 중 27건은 선적화물신고서에 실제 적재화물과 다르게 신고했거나 오인을 유발토록 기재한 혐의로 40만 달러를 벌금을 물었고, 1992년 New World Transtechnology사는 Sun Micro Systems 컴퓨터를 중국 핵장비공장에 불법수출을 시도하여 홍콩을 경유하여 환적되기 전에 적발되어 허위신고 1회와 2회 불법수출혐의로 벌금 1만불과 10년간의 수출금지 처분을 받았다. IBM 러시아 현지법인(IBM East Europe/Asia)는 러시아의 핵무기연구소에서 직간접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17대의 컴퓨터를 공급한 혐의로 850만불의 형사벌금과 상무부로부터 171천불의 행정과태료, 2년간의 수출제한과 2년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Lansing Technologies사는 허가를 받지 않고 vector 컴퓨터 프로세서와 Data acquisition control system을 중국에 수출한 혐의로 벌금 1만불, 1992년 Dell 컴퓨터사는 사전 허가없이 미국산 컴퓨터를 3회에 걸쳐 이란에 선적한 혐의로 상무부의 5만불의 행정과태료 처분, Sun Micro Systems of California사와 Gold Valley사는 중국에 실제선적 제품과 다르게 신고된 선적 명세로 수출허가조건을 알았거나 충

분히 알만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3만불씩의 벌금형을 받았다.

## 2) 미국에서 불법수출로 적발된 물자(95~2000)

○IT 및 전자 : 선마이크로시스템 컴퓨터, 반도체장비, 반도체검사장비, 컴퓨터 및 프로세스, 데이터통제시스템, s/w, 誘電體분석장비, 전자부품, 통신장비, 전극, 전기검침장비, Thyatron, 열화상카메라, 광섬유화상전환기, 라디오통신장비

○기계류 : 산업용기계, 공작기계, 5축 밀링머신, 선반, 유전개발, 유전설비, 디젤엔진부품, 차량, 자동차부품, 방사용펌프, 원심분리펌프, Polygraph 장비, 비행기부품, Diaphragm밸브

○정밀계측기 : 야간투시장비, 레이저 망원경, 광학안경, 자동지문인식장비, 인큐베이터, 의료장비, 광학장비, 측정장비, 자외선열탐지시스템, 자이로스코프, 다이오드레이저

○화학 : 가스마스크, 가스검침장비, 가스모니터, 화학물질, 염화칼륨, 불화칼륨, 불화소다, 청화소다, 불화수소, 독소물질, 파이프로킹물질, ATJ급 탄소섬유(로켓노즐 사용가능), 페퍼스프레이건, 방탄복, 트리에탄올아민, 페인트, 플라스틱, 폭발성화학물질(암모늄 Per-chlorate),

○소재 : 티타늄합금, 고강도알루미늄, 알루미늄, 알루미늄, 유전용 파이프, 부유체(Floating point system), 지르코늄

○군사 : 호크미사일시스템, 팬텀기부품, 핵기술, 조준 스크프, 군용차량, 질차, 범죄통제장비, 헬멧, 스텔전,

지프부속품, 수갑, 진압용방패,

## 3. 국제수출통제체제

### 1) 전략물자란?

수출통제설명회에 참석한 종합무역상사 직원에게 전략물자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방산물자로 오해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불법수출로 적발된 물품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통제대상 품목은 무기나 방산물자가 아니라 훨씬 방대하고 광범위하다.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대상 물품으로 정해진 리스트는 영문으로 400여페이지에 이르는 전문적 기술용어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기업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자사제품이 각 통제번호에 기재된 물품에 해당하는지 알기가 어려워 산업자원부는 2003. 12월에 통제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기업이 쉽게 알 수 있도록하는 의미있는 작업을 완료하였다. 수출품의 HS코드에 의하여 수출통제체제에 해당부분의 통제번호를 연계함으로써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술적 검토범위를 수백분지 1로 압축해서 기업의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통제리스트 전체를 이해한 후, 자사제품이 전략물자인지 검토할 수 있었으나 HS코드로 확인된 통제번호 해당부분의 기술내용만 검토하면 판단할 수 있도록 검토범위를 축소시킨 것이다.

전략물자일 가능성이 있는 HS10단위는 1993개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2003년 수출규모는 720억불, 140만건이며 수출업체는 35,000업체가 넘는다. 업체들이 전략물자일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기업이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에 접속하여, “정책마당”정책자

료”를 선택하고 Search기능에 “전략물자”를 검색후 “정책마당”을 선택하면 2004. 2. 2일에 국민에게 공개된 「전략물자 HS코드화 작업결과」를 볼 수 있다. 여기에 첨부된 파일에 자사제품이 속한 HS에 들어가면 전략물자 통제번호가 열거되어 있으며, 전략물자수출입공고 통제리스트에 통제번호의 기재내용을 볼 수 있다. 자사제품에 속한 HS 번호가 안보이면, 일단은 통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안심해도 좋다. 다만, 캐치올 제도까지 채택하고 있으므로 통제대상리스트에 없지만, 수입자쪽에서 우려되는 용도에 사용할 기미가 있으면 수출자가 산업자원부에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사제품이 속한 HS에 통제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에 기재된 기술명세에 자사제품이 해당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통제대상 리스트는 국제수출통제체제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이다. 그 체제는, 핵확산 저지를 NSG(핵공급그룹),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확산을 저지하는 AG(호주그룹), MTCR(미사일통제체제), 재래식무기를 통제하는 WA(바세나르협약), 쟁거위원회 5개의 통제체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쟁거위원회는 별도의 통제리스트가 없는 대신에 화학무기협약(CWC)은 통제대상리스트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5개 국제체제가 통보해온 통제리스트를 번역하여 공고에 반영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기업의 소극적 대처로 이행수준은 저조한 편이다.

### 2) 우리업체와는 무관한가?

우리 수출통제의 현주소와 관련 국내의 기업으로부터 몇가지 의미있는 말을 공유하고 싶다. 첫째는, 통제대상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급능력이다. D기업의 임원은, “우리의 조그

만 중소기업도 도면과 주문사양을 받으면 통제대상 물품의 어느 물품이든 공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그러한 물건이 핵개발이나 미사일개발, 화학무기개발 등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모르고,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둘째는, 우리는 거래 상대방인 수입국이나 수입자에 대하여 주의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 미국은 모든 나라를 열거하고 어떤 체제에 관련된 물품과 기술은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할지, 허가를 안받아도 되는지가 열거되어 있다. 국제적으로 주의를 요하는 나라는 테러지원국가, 환적우려국가, 대량살상무기 확산우려국가들이 국제협약체에서 거명된다. 테러지원국에 대해서는 식품, 비료, 의약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을 개별허가로 통제하고 있고, 환적우려국에 대해서는 해운, 중개상, 환적사실에 대하여 통제하며, 우려국가나 집단에 대하여는 이중용도에 대하여 관리한다.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개발의사를 보유하고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나라를 확산우려국가라고 한다. 이러한 나라는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수단, 쿠바, 북한,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UAE, 몰타, 예멘, 이집트,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중국, 대만, 아프가니스탄 등이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나라들은 우리무역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우리업체들이 수출통제를 이행할 필요성은 크다. 또한 이들 국가 외에 여타 나라에도 국제사회에서 회람하는 부적격거래자(Denial Parties List), 요주의 기업(Watch List)가 있는데 그 규모는 8백개가 넘으며 각국가가 내부관리하는 정보가 상호교환될 경우 수천개에 이를 것이다. 국제체제는 이들 기업에 대해서 회원국 기업들이 전략물자 거래를 하지 않도록 되어있다(No

undercut policy). 그러나 다른 회원국의 어떤 기업이 대량파괴 무기 확산과 관련이 없다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거래하기를 원한다면 동 품목에 대해 최초로 거래를 거부한 국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셋째, 수출할 때 최종용도, 최종사용자를 확인하지 않는다. 최종사용자가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부적격거래자이거나 최종 용도가 요주의 국가에서 개발 시설이나 용도로 사용되면 면책증거가 없는 한, 관련기업은 제재를 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수입상, 신규 바이어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자, 최종 용도를 확인하고 솔직한 정보에 따라 수출허가 절차를 밟아야 안전하다. 그런데 미국계 국내기업들이 주장하기를, 우리의 중견기업, 유명한 대표기업조차 중간상에게 수출하면서도 전혀 체크를 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며, 외국계 자기 회사가 수출을 포기한 수입업체에게 수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추정한다.

넷째, 2003. 1월부터 캐치올제도가 우리나라에 시행중이다. 캐치올(Catch-all)이란, 국제통제대상 리스트에 해당하지 않지만, 성능이 낮더라도 우려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고 그러한 징후가 인지되었을 때는 허가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제도이다. 미국 상무부는 자국기업에 교육시키는 “수입자로부터 느껴야 할 경고신호(Red flag indicators)”로 인정한 경우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있으며, 캐치올의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유사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① 수요자가 구매물자의 최종용도에 대한 정보제공을 싫어하거나 바이어의 사업라인과 부적합한 제품이나 성능, 수량을 주문하는 경우 ; ② 가격이나 거래조건이 좋거나 고가의 물품에 저리의 금융제공 조건이 관행임에도 현금으로 결제하려는 경우 ; ③ 설비의 설치, 훈련, 유지관

리서비스가 관행인 데 이를 사절하는 경우 ; ④ 납기, 선적루트가 예상 밖이거나 최종 목적지가 화물취급회사로 되어있는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은 수입자, 바이어의 자세는 우려용도로 사용할 의의가 있는 경고신호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산업용이지만 대량파괴무기로 이용될 수 있는 물품을 이중용도라고 하며, 경고신호는 우려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신호로 인식하고 수출허가당국에 신고해야한다. 이러한 경고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이중용도 가능성을 알고도 대처하지 않은 증거로 남는다. 바로 이중용도 가능성에 불구하고 의도적(Willful)으로 협력한 사실은 처벌요건이다.

그런데 캐치올은 수출통제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여 결국 우리수출규모의 거의 절반 약 920억불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4. 우리수출통제체제의 대응방향

우리나라는 89년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전략물자수출입통제제도를 도입하고 수출허가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03년 이후 주목할 요소들이 나타나고있다. CSI의 컨테이너에 대한 검색강화, X-ray투시기 등 첨단장비의 이동감시, PSI 등 수출통제 실질적 이행에 대한 국제적 검색강화와 불법화물을 색출·추적시스템이 국제공조형태로 강화되고 있다. 작년 9월 화학무기원료(청화소다) 불법수출 적발, 12월 리비아에 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에서 우리업체가 수출한 밸런싱머신이 적발되었고, 이란, 리비아가 그들의 핵, 미사일개발 의혹에 국제사찰을 수용하였다. 따라서 금년중 추가사찰이 예상된다. 그리고, 통제대상 품목의 생산능력이 있는 우리업체

들은, 신규바이어가 좋은 가격조건으로 주문하면 최종 용도에 의심하지 않고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중동, 인도, 파키스탄, 중국, 이란 등 요주의 지역에 수출비중이 높다. 따라서 우리업체가 불법수출이 추가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불법수출이 적발될 경우, 개별기업은 국제체제로부터 일반적으로 3년간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수출을 금지당하게 된다. 미국으로부터는 20년까지 수출제재를 받게 된다. 수출이 성장동력인 기업이나 국가에서 성장동력이 멈춰버리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전 예방적 통제체제를 구축하고, 그러면서도 기업의 자율통제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통제는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업체경영진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할 일은 공청회, 간담회 및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켜야 하며, 적어도 전략물자를 방산물자로 오해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하는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400페이지에 달하는 통제대상리스트가 전문적 기술용어로 기재되어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우리기업이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해결해야 한다. 미국은 HS와 전혀 다른, ECCN(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이라는 분류체계를 채택하여 이 분류체계를 이해하는 품목전문가를 기업이 고용하여 제품출시 단계에 ECCN을 부여하고, 수출할 때 해당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업에게 전략물자 통제리스트 전체를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물품분류체계를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실정에 과중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적합하다. 제품이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식별할 수 있는 판별도구로 일본, EU 등에서 사용하는 체크리스트와 파라메타시트(Parameter-sheet)를 사용하고 있다. 이 파라메타시트는 세부품목별 해당과 비해당을 구별하는 한계값을 모아 기업이 자사제품의 특성을 기재하여 통제대상 여부를 판별한다. 이 파라메타시트는 일본의 경우 업종별 선도기업이 작성하여 중소기업이 동일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질문과 응답방식으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과 기업에 자율준수제도를 채택한 기업도 거의 없고 외국사례를 연구하여 기업이 스스로 개발·사용하는 사례도 없다. 따라서 동 제도에 인식이 저조한 기업이 보다 쉽게 전략물자해당 여부를 판별할 도구 즉 체크리스트와 파라메타시트를 정부가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당물품이 많은 기업에서는 통제를 위하여 해당분야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므로 분야별 전문용어와 기술전체를 알기 쉽도록 도면첨부, 현장용어 사용 등으로 구성된 해설서도 만들어 기업에게 제공해야 한다.

판별도구가 제공된 후에도 자사제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정할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HS 1993의 전략물자일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 정부가 판정을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기업이 스스로 판정하지만 ECCN을 부여할 능력이 없는 기업이 자문할 경우 상무부의 99개분야 전문가 그룹 약 150명이 ECCN을 판정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정을 경험한 기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부지원으

로 판정해서 비해당의 경우 자유수출을 보장하고, 해당의 경우 허가절차를 밟도록하는 방법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최단시간에 우리기업의 이행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기업이 이행 경향을 추적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와 판정을 담당하게 될 업종별 단체에서는 판정과정에서 기업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실제로 해당품목인데 비해당 판정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실과 다른 정보로 비해당으로 판정을 받는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정확한 정보와 절차로 비해당 판정을 받으면 그 기록자체가 면책증거가 된다. 마찬가지로 전략물자에 해당되지만 허가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은 후 수출했고, 후에 불순한 목적에 사용되어 적발되었을 때 면책증거가 된다. 물론 불순한 목적에 사용될 것을 알고 밝히지 않았다면, 면책증거는 휴지 조각이 되어 증거능력을 상실한다. 허위사실은 처벌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간 수백만건의 판정 데이터와 수출허가를 전자서류와 인터넷을 이용해서 행정처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은 정부의 행정수요증가로 인한 증원수요를 최소화 할 수 있고 기업이 절차를 이행하는데 부담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PSI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화물에 대하여 혐의 사실을 통보해 왔을 때, 또는 우리수출물품이 차단대상으로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게 가능하게 될 것이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신 분 중에 전략물자수출통제에 대하여 질의나 기업현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주실 분은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관리과(전화 2110-5341~5), 이메일 [soungkun@mocie.go.kr](mailto:soungkun@mocie.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